

기획 파트너 GH

2025 경기도민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 홈페이지 | www.gh.or.kr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 콜센터 | 1588-805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2025 경기도민을 위한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합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가 함께 합니다.



KB부동산 GH전용관



GH전세임대 챗봇



청렴을 실천하여
신뢰를 만듭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센트럴타운로 43(이의동)
대표전화 1588-0466 전세임대 콜센터 1588-8056

2025 경기도민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01 |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개 02

02 |

계약 및 입주절차 04

03 |

추가 지원 및 기타 유의사항 07

- 주택 임대절차 알아보기
- 임대 금액 별 보증금 및 월 이자
- 알아두면 좋은 주택 법률

04 |

자주 묻는 질문들 14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소개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임대기간

- 최초 2년 계약
- 자격유지 시 **1순위자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2순위자는 14회 재계약 가능**
※ 만 65세 이상 계약자는 임대기간 제한없음(종신 주거지원 가능)

계약 완료 시한

- 2025년 12월 말까지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전세 최대 지원금

- **기존주택 전세임대(일반)**
 - 전세금 13,000만원 한도 내에서 95% 지원(**최대 12,350만원**)
※ 12,3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하여야 하며 전세 계약시 최대 32,500만원까지 계약 가능
 - 입주자 부담 : 전세보증금의 **5%(650만원)** + 지원한도 초과액
※ 1순위 해당 입주자는 최초 신규계약(보증부월세 제외, 입주자가 지원한도 초과액 부담시 제외)에 한하여 전세보증금의 2%까지 입주자부담률 인하 가능. 이후 이사재계약시 5% 입주자부담률 적용됨
※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가능하나 월세 및 임대료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3개월분의 월세를 추가로 계약금으로 내야함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에서 입주자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부담

지원금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	연 1%	연 1.5%	연 2%

※ 임대 금액별 보증금 및 월 이자, 10페이지 참조

우대금리 안내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0.2%p
- 만 19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0.5%p
※ 수급자 및 자녀수 중복 적용 가능하나 최저금리 연 1%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 단,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가구 및 5인 이상 가구는 면적제한 없음
- 불법건축물 지원불가(건축물 대장에서 사전 확인)
- (반)지하주택 지원 불가
※ 단, 침수방지시설 중 차수판(물막이판)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조건 산정(예시)

전세금
13,000만원의
전세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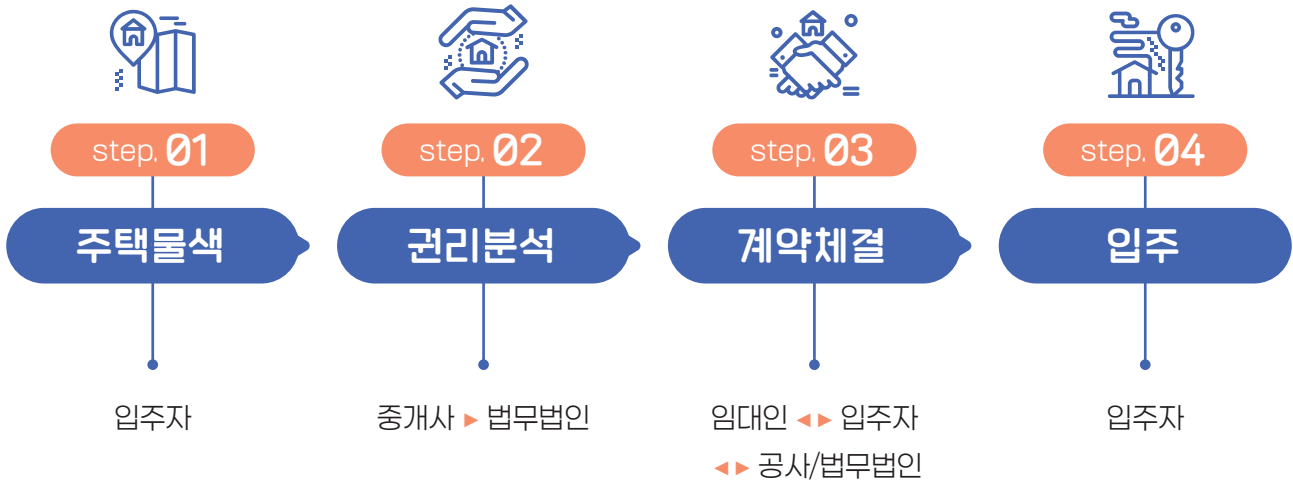
- **입주자보증금** 650만원
- **공사 지원금** 12,350만원
- **월 임대료** 월임대료 [(전세금-입주자보증금)×연 2%÷12개월]
= [(13,000만원-650만원)×2%÷12]
=205,830원
※ 입주자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부담

전세금
13,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 월세주택

- **입주자보증금** 680만원
(기본 650만원+3개월분 월세 해당액 30만원)
- **공사 지원금** 12,320만원
- **월 임대료** 월임대료 [(전세금-입주자보증금)×연 2%÷12개월]
= [(13,000만원-680만원)×2%÷12]=
=205,330원
※ 입주자보증금, 월임대료, 월세는 입주자 부담
※ 월세 한도액 : 60만원



계약 및 입주절차



대상주택 물색 절차

- **전세임대 사업대상지역** : 경기도 전 지역(31개 시·군)
- 가급적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 관할구역에서 물색하되, 불가피하게 해당 지역을 벗어날 경우 우리공사에 통보
(최초 계약은 경기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후 타지역 이주 가능)
- **입주대상자가 공인중개사에 의뢰하여 전세주택 물색**
-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도 집주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 활용 가능

권리분석 심사 절차

- 심사표를 작성하여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도시공사를 대행)에 팩스 송부
- **권리분석 적합요건**
(주택가격×90%-부채)가 전세보증금 이상인 주택
- 주택가격 : 국민은행 일반평균가 시세,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의 140%
- 부채 : 선순위 임차보증금, 근저당권 등 선순위 채권 합계액

※ 권리분석 심사결과는 법무법인에서 공인중개사 또는 입주자에게 별도 통보해드립니다.
 ※ 권리분석 전, 공사의 승인없는 임의 계약은 금지되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는 공사에서 책임 지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 임대인, 입주자, 도시공사(법무법인) 3자간에 부동산 전세계약 체결
- 입주자, 도시공사(법무법인) 2자간에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자 보증금 5%는 계약 시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
- 입주자는 주택에 대한 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하자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

임대인	입주자
도장, 신분증 사본, 임대인 명의 통장사본 ※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의인감 증명서(본인발급), 수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수급자증명서(또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도장,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계약금 영수증 및 계좌입금확인서 ※ 위임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수임자의 도장 및 신분증 사본 ※ 인감도장 대신에 서명을 사용하는 경우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주민 센터 발급)를 첨부

입주절차

- 입주일까지 입주주택에 전입신고(주민등록등본 팩스 송부)
- 공사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95%)은 계약서에 표기된 잔금 지급일에 임대인
계좌로 입금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이 있으신 분은 계약체결 전에 미리 상환해야 함(상환
영수증 팩스 송부)
- 입주일자에 맞춰 해당주택 입주 및 거주 의무

※ 공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기간(계약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전세금이 회수되지 않은 기간 포함)내에
공사의 동의 없이 입주자가 주민등록 또는 점유 이전하여 대항력이 상실되거나 변제순위가 뒤로
밀려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지원이 중단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수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

구분	권역	지역	법무법인	전화	FAX
남부	제1권역 (7개시)	군포시, 수원시, 안산시, 안성시, 오산시, 평택시, 화성시	서린 법무법인	031.213.3020 031.213.1115 070.4282.0184 070.4282.0187	031.360.6380
	제2권역 (9개시)	과천시, 광주시, 성남시, 안양시, 여주시, 용인시, 의왕시, 이천시, 하남시	서린 법무법인	031.214.4020 070.4150.0724 070.4150.0725 070.4907.8157	031.360.6370
북부	제3권역 (6개시)	광명시, 부천시, 시흥시,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	덕수 법무법인	02.554.5302 070.4464.7630 070.4496.1716 070.4496.1714	02.6008.5306
	제4권역 (9개시·군)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양평군,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선린 법무법인	1670.6347 070.5167.1397 070.5167.1406 070.5167.1390 02.6348.6347	02.6280.7760



권리분석 및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서류
권리분석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및 권리분석심사표(18페이지 참조) · 해당 주택 등기부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수급자·한부모·차상위·주거급여·장애인증명서(해당 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국세 납세증명서(임대인), 지방세 납세증명서(임대인)
계약체결 시	주택소유자 (임대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도장 및 신분증 사본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단독, 다가구, 복합주택 신청시)
	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등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자격증명서(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 가족증명서) · 도장,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입주자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리분석 시 법무법인에 팩스전송한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주택도시보증공사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조회 동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증부월세의 경우만 해당 · 계약금(계약 당일 반드시 입주자 본인이 사전에 준비)
	공인중개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자등록증 및 공제증서 사본 ·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 통장 사본(중개사 명의) ·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과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발행

대리인에 의한 계약시 추가제출 서류

- 위임장 [전세계약 위임용(공사양식), 위임자의 인감날인 또는 자필 서명]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 발급)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 신분증
- ※ 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용도 : 경기주택도시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계약 체결용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수임인 : 수임인 기재사항에 성명과 주소(주민등록상) 기재
 ③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추가

추가 지원 및 기타 유의사항

1. 추가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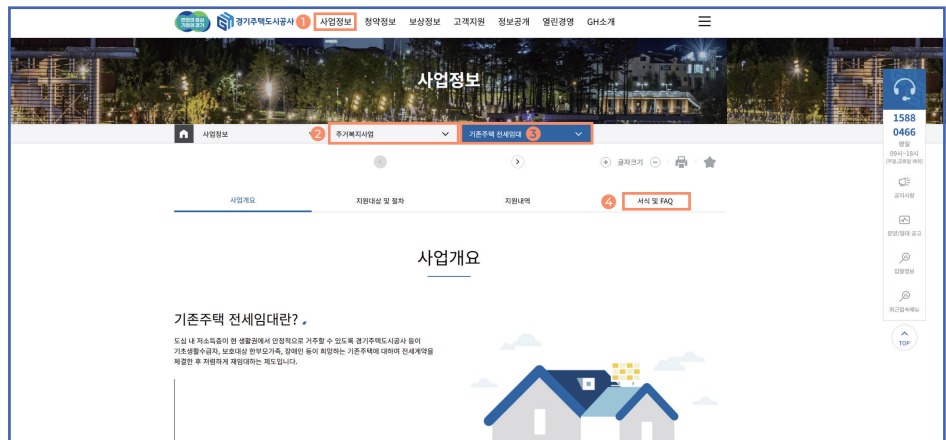
중개수수료 지원

- 법정수수료 기준 최대 39만원을 지원하며,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지원
- 지원한도를 초과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부담
- 거주기간 6개월 내 이주하여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입주자 부담

도배 장판 비용 지원

- 전체 지원기간 중 10년마다 1회씩 도배장판 비용을 최대 60만원(부가세 포함) 금액 내에서 지원
- 지원한도를 초과한 도배장판 비용은 입주자 부담
- 시공업체는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이 발행 가능한 업체를 입주자가 직접 선정하여 공사 의뢰
- 공사 시행 전, 시공업체가 법무법인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요청

관련 서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서
 사업정보 ▶ 주거복지사업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서식 및 FAQ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공사 완료 후, 구비서류(공사완료확인서, 공사 전·후 사진,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를 법무법인으로 우편 송부하여 청구

2. 기타 유의사항

- ☑ 입주 시까지 입주자격(소득, 자산 및 세대구성 등)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 부동산중개료, 등기비용 및 기타 법무법인수수료는 공사에서 지원합니다.
(계약금액이 지원한도 초과 시 초과되는 부분의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
- ☑ 기존에 주택도시기금을 대출 받으신 분은 계약 전까지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이 불가능하고,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 및 손해 발생 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하시거나 만료가 도래하였을 경우 전세금 반환 문제와 위약금 관련 문제는 주택소유자와 입주자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 ☑ 입주자는 입주일까지 본 전세임대주택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필하여야 합니다.
- ☑ 계약기간 중 입주자 사정으로 타 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일체의 비용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 계약서가 작성되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위약금(임대 보증금의 5%)부담 등 일체의 책임 의무가 발생합니다.
- ☑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비 등은 입주자가 직접 주택소유자에게 부담해야 합니다.
- ☑ **공사에서는 주택의 물리적인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입주자는 계약 전에 주택을 자세히 살피시어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수리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사 이후 주택에 물리적인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주택소유자와 직접 협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 ☑ 계약해지 시 하자보수비용 또는 원상회복비용 문제는 주택소유자와 입주자가 직접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 ☑ 계약기간 중 입주자가 무단 전출 또는 점유 이전 등 대항력 상실 시, 임대료 3개월 이상 미납시에는 계약이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 **경매 등의 사유로 지원주택에 법원통지서(권리신고, 배당요구서 등) 등이 송달되거나, 경매개시결정 이후 법원의 현황 조사 등이 있을 경우 이 사실을 즉시! 반드시! 우리공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 ☑ 전세임대 지원기간 중 영구임대, 국민임대 또는 공공임대에 당첨되신 분들은 현 전세주택의 명도 및 전세금 회수가 완료된 후에 이주가 가능하오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 입주자의 개인정보(연락처 등) 변경사항이 있거나 매매로 인해 임대인이 변경될 경우 필히 우리공사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33페이지 참조)
- ☑ 재계약 시, 기존 입주자격이 상실(변경)된 경우 소득요건을 확인하여 임대료를 할증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이 가능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임대절차 알아보기

계약 전 유의사항

- 임차할 주택의 상태, 시설물의 하자 등을 현장답사를 통해 체크
- 임대권한이 있는 자와 계약하되, 계약자 본인명의 주민등록증 확인 (대리계약의 경우 : 위임장, 인감증명서 확인 후 보관)
-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등의 권리등재 및 채권확보 여부 확인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확인사항

- 전임차인 퇴거일과 입주일 및 관리비 처리 여부 확인
- 임차주택 사용부분을 계약서상 정확히 표시(번지, 동, 호수 등) 공부상 일치 확인
- 계약금과 잔금의 금액 및 지급일정과 임대차기간 명시
- 임대료지급의 방법
- 시설 상태 및 하자 수리 부담 여부
- 구조 변경 및 원상회복 문제
- 위약 및 계약해제사항
- 각종 공과금 해결, 관리비 문제 등 특약란 적극 활용
-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경우는 중개수수료 지불문제 확인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및 교부
- 잔금을 치르기 전 권리변동 있는 지 등기부등본 등 다시 확인

입주 시 유의사항

- 입주일까지 전입신고
 - ※ 대항력 유지를 위해 입주 당일에는 전입을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 전입신고시 번지, 동, 호수 등 공부상 일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단독주택인 경우 층수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계약 시 유의사항

- 등기부상의 소유주와 계약 체결
- 증액금액에 대해 확정일자 다시받기

계약만료 시 유의사항

-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공사와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해지 통보

임대 금액 별 보증금 및 월 이자

(단위 : 원)

전세금	지원금(95%)	보증금(5%)	월이자	전세금	지원금(95%)	보증금(5%)	월이자
130,000,000	123,500,000	6,500,000	205,830	62,000,000	58,900,000	3,100,000	73,620
125,000,000	118,750,000	6,250,000	197,910	61,000,000	57,950,000	3,050,000	72,430
120,000,000	114,000,000	6,000,000	190,000	60,000,000	57,000,000	3,000,000	71,250
115,000,000	109,250,000	5,750,000	182,080	59,000,000	56,050,000	2,950,000	70,060
110,000,000	104,500,000	5,500,000	174,160	58,000,000	55,100,000	2,900,000	68,870
105,000,000	99,750,000	5,250,000	166,250	57,000,000	54,150,000	2,850,000	67,680
100,000,000	95,000,000	5,000,000	158,330	56,000,000	53,200,000	2,800,000	66,500
95,000,000	90,250,000	4,750,000	150,410	55,000,000	52,250,000	2,750,000	65,310
90,000,000	85,500,000	4,500,000	142,500	54,000,000	51,300,000	2,700,000	64,120
89,000,000	84,550,000	4,450,000	140,910	53,000,000	50,350,000	2,650,000	62,930
88,000,000	83,600,000	4,400,000	139,330	52,000,000	49,400,000	2,600,000	61,750
87,000,000	82,650,000	4,350,000	137,750	51,000,000	48,450,000	2,550,000	60,560
86,000,000	81,700,000	4,300,000	136,160	50,000,000	47,500,000	2,500,000	59,370
85,000,000	80,750,000	4,250,000	134,580	49,000,000	46,550,000	2,450,000	58,180
84,000,000	79,800,000	4,200,000	133,000	48,000,000	45,600,000	2,400,000	57,000
83,000,000	78,850,000	4,150,000	131,410	47,000,000	44,650,000	2,350,000	55,810
82,000,000	77,900,000	4,100,000	129,830	46,000,000	43,700,000	2,300,000	54,620
81,000,000	76,950,000	4,050,000	128,250	45,000,000	42,750,000	2,250,000	53,430
80,000,000	76,000,000	4,000,000	126,660	44,000,000	41,800,000	2,200,000	52,250
79,000,000	75,050,000	3,950,000	125,080	43,000,000	40,850,000	2,150,000	51,060
78,000,000	74,100,000	3,900,000	123,500	42,000,000	39,900,000	2,100,000	33,250
77,000,000	73,150,000	3,850,000	121,910	41,000,000	38,950,000	2,050,000	32,450
76,000,000	72,200,000	3,800,000	120,330	40,000,000	38,000,000	2,000,000	31,660
75,000,000	71,250,000	3,750,000	118,750	39,000,000	37,050,000	1,950,000	30,870
74,000,000	70,300,000	3,700,000	117,160	38,000,000	36,100,000	1,900,000	30,080
73,000,000	69,350,000	3,650,000	115,580	37,000,000	35,150,000	1,850,000	29,290
72,000,000	68,400,000	3,600,000	114,000	36,000,000	34,200,000	1,800,000	28,500
71,000,000	67,450,000	3,550,000	112,410	35,000,000	33,250,000	1,750,000	27,700
70,000,000	66,500,000	3,500,000	110,830	34,000,000	32,300,000	1,700,000	26,910
69,000,000	65,550,000	3,450,000	109,250	33,000,000	31,350,000	1,650,000	26,120
68,000,000	64,600,000	3,400,000	107,660	32,000,000	30,400,000	1,600,000	25,330
67,000,000	63,650,000	3,350,000	106,080	31,000,000	29,450,000	1,550,000	24,540
66,000,000	62,700,000	3,300,000	104,500	30,000,000	28,500,000	1,500,000	23,750
65,000,000	61,750,000	3,250,000	102,910	25,000,000	23,750,000	1,250,000	19,790
64,000,000	60,800,000	3,200,000	101,330	20,000,000	19,000,000	1,000,000	15,830
63,000,000	59,850,000	3,150,000	74,810	15,000,000	14,250,000	750,000	11,870

알아두면 좋은 주택 법률

1. 임차권 승계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승계하게 되고,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및 제1003조)
- 임차인이 사망할 당시에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 임차인과 함께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 만일, 2촌 이내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없는 경우

-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단독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 '가정공동생활'이란 동거를 하면서 생계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임차권을 포함한 임차인의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됩니다. (『민법』 제1058조 제1항)

혼인 및 이혼

- 임차인이 혼인 또는 이혼으로 전세임대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 하려는 임차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세대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 승계의 포기



- 사망한 임차인의 채무가 보증금반환채권을 초과하여 임차권을 승계하는 것이 불리하다는 등과 같은 사유로 임차권의 승계권자가 임차권 승계를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사망한 후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반대의사, 즉 임차권을 승계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임차권의 승계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3항)

3. 임대차 보호

임차인 보증금 보호

-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은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취득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다음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임차인은 매수인·경락인 등 제3자에게도 임대차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임차권 등기 (『민법』 제621조)
 -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전입신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대항력 등) ②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주거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지방자치 단체의 장 또는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그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쳤을 때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항력이 인정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선변제권 취득

- 임차인이 위의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임대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환가대금으로부터 후순위의 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

- 임대차보증금이 소액인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에 경매신청등기가 등기부에 기재 되기 전에 전입신고 및 주택의 점유 요건을 갖추면, 일정액의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 10조

제10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 5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4천8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천500만원
-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전세임대 신청 시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고 하는데,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가 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유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주소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와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까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로 전세임대 주택을 신청하였는데, 계약 전에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에서 탈락 된다면 계약이 불가능한가요?

계약 전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더라도 기존주택 임주자격(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 평균 소득 50%이하인 자, 월 평균소득 100%이하 등록 장애인) 중 하나를 만족한다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Q 계약해지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 해지 전에 우리공사와 임대인(집주인)에게 미리 문의하시기 바라며, 계약해지 시에는 입주만료일 까지의 임대료를 완납하셔야 하며, 입주자부담금은 임대인(집주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임대료 완납확인 후에 반환해드립니다. 임대인이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입주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전부 반환하면 입주자는 이사를 하시면 됩니다.

Q 기존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존에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신 경우 계약 전까지 반드시 상환하셔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 전까지 상환영수증을 공사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계약 전 상환하지 않으실 경우에 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가구원수가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이전 선정 인원에서 세대원이 추가 될 경우 추가된 세대원을 포함하여 다시 소득조회를 하게 되며, 계약이후 세대원이 추가 될 경우 재계약 전 소득 조회하여 결과에 따라 재계약 진행시 재계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Q 첫 달 임대료가 청구되지 않는데 왜 그런 건가요?

입주일이 속한 첫 달 임대료는 다음 달 임대료에 합산되어 청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번째 달 임대료는 매월 납입하시는 금액과 다른 금액이 청구됩니다.

Q 거주기간동안 임대료가 미납되었을 경우 불이익은 없나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와 입주자 자격상실의 경우에 임대차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미성년자 세 명 이상 자녀인 가구에 해당하여 85㎡ 이상 주택에 살고 있는데, 자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미성년자인 자녀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성년이 된 경우에는 총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주택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재계약 시점에 공사 지역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이사재계약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전세임대주택 계약금 지불 후, 주택의 하자 등으로 다른 주택으로 옮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입주자 본인이 거주하실 주택이므로 계약 전에 주택의 하자가 없는지, 다른 입주자에게 물어보거나 누수 등이 없는 지 신중하고 철저하게 주택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계약 후 입주 전에 계약 파기 시에는 계약금의 피해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거주 하실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 등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를 하셔야 합니다.

Q 거주기간동안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전세계약과 임대차계약은 계속 유효하므로 계약 기간동안은 거주 하실 수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집을 이사하라고 요구하신다면 우리공사에 연락을 주셔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새로운 집주인의 정보(성명, 전화번호 등)를 우리공사로 반드시 알려주셔야 합니다.

Q 전세임대주택에 살던 중 계약자(임차인)가 사망하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사망(법원의 실종선고 판결 시 포함) 또는 임차인의 혼인, 이혼의 경우에는 임차인과 거주를 같이하는 잔여 세대원은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현재의 전세계약에 따른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단, 전세계약 기간만료 이후에는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습니다.

Q 재계약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만료 3개월 전 우리공사에 미리 문의하시기 바라며, 재계약시 기존 자격요건(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월 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월 평균소득 100% 이하 등록 장애인 등)을 유지계약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신규계약 절차와 동일하며 재계약 이전에 임대료를 완납하셔야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2025 경기도민을 위한

기존주택 전세임대

관련 서식



전세임대주택 신청서 및 권리분석 심사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신규, 재계약) 지원신청서 (전세권 / 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출여부	대출액	(전세보증금 지급 시 까지 상환)			
신청자 (입주자)	성명(세대주)		주민번호(앞 6자리)	세대원수	연락처
	(서명,인감날인)				
입주희망 주택현황	주소				
	주택 유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면적	m ² (방 개)	채권확보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중 여부	예 /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대항력 (보증보험) <input type="checkbox"/> 전세권 (사유 :)
소유자	성명 :				(연락처 :)
	주소 :				
중개사	상호명 :	대표자 :	(등록번호 :)		
	주소 :	(연락처 :)			
제출서류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희망주택 등기부등본(단독주택 등은 건물 및 토지등기부 모두 제출) · 본인 주민등록등본 ·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직계존비속 주택유무 확인) 각 1부 · 매매계약서(매매중인 주택에 한함) · 다가구, 단독주택의 경우 입주희망 층 도면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정) 탈락 등 수급권에 변동이 있으신 경우 공사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분석 종료전 가계약을 할 경우 권리분석 과정에서 지원불가 주택으로 판명시 가계약금등 모든 비용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신청시 작성하신 사항(선순위 임차보증금내역 포함)이 계약 체결시 변동될 경우 전세금 지원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전세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날인)

권리분석 심사표						
주택가격	전세가격(A)		임차목적물 가격(B)			
	만원		공시지가*140%	감정가액	KB시세	거래가액
			만원	만원	만원	
권리현황	1. 등기부상 갑구(가압류 등)					
	2. 등기부상 을구(근저당설정 등)					
	3. 선순위임차보증금		만원/선임차인 ()타임차인 보증금()			
	4. 채권확보 (B×90%-선순위채권(2.3))		만원	계약 가능여부	가능 / 불가능	

※ 권리분석 심사 시 유의사항

1. 3. "타임차인 보증금"은 임차목적물이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단독, 다가구주택 등의 일부인 경우, 이를 제외한 임차되지 않은 부분(임대인이 거주하는 부분 포함)의 예상 임차보증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임차되지 않은 부분의 예상 임차보증금"은 임대차가 가능한 방실의 수에 대해 선순위 임차보증금 전액과 후순위 최우선변제 임차보증금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단독, 다가구주택 한 층의 일부인 경우 건축물 현황도면을 첨부하거나 뒷면에 평면도를 작도하여야 한다.
3. 임차목적물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근저당권의 채권금액(채권최고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가. 공동 (근저당권 채권금액(채권최고액))*[1/공동 (근저당권대상호수) 또는 공동 (근저당권 채권금액(채권최고액))*[해당 임차목적물 전용면적/공동 (근저당권 대상전체 전용면적]
 - (단, 공동 담보 물건이 해당 임차목적물이 속한 토지 또는 건물과 별개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심사일 : 20 년 월 일

중개사 (확인)	(인)	법무법인 [확인]	법무법인 OOO	(인)
-------------	-----	--------------	-------------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단독 · 다가구주택의 일부에 대한 전세계약용)

임차목적물 주소지 :

(단위:만원)

층수	호수	계약유형	보증금	월세	방개수	최우선 변제보증금	비고
합계							

* 계약유형: 전세, 반전세, 월세

□ 본인은 상기 주택의 임대인(또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한 공인중개업자)으로서 위 확인 내용이 사실
과 동일함을 확인함

년 월 일

확 인 자	임대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개업공인중 개사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인)
		주 소				
		연락처				

※ 동 서류는 기 체결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현황」, 「전입세대 확인서」를 참고하여 작성
할 수 있으며, 임대인 및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이 필요함

※ 날인은 임대차계약서상 날인 또는 인감증명서(본인 서명 확인서)상 인감(서명)과 동일해야 함

경기주택도시공사 귀중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경기주택도시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입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input type="checkbox"/>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지속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input type="checkbox"/>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input type="checkbox"/>	- 토지, 주택, 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input type="checkbox"/>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임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경기주택도시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 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금융결제원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미안함을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같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미이해하였습니다.**

[필수]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제공 상세 동의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개인임대인용)






서울보증보험(주) 귀중

귀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이외의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보험계약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관련 업무 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계약의 인수심사체결·이행·유지관리(변경 및 갱신 포함) - 민원처리 및 분쟁 대응 - 법률 및 국제 협약 등의 의무 이행 - 보험사고 조사(보험사기 조사 포함) - 대위변제시 대위권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행위
보유 및 이용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의일로부터 거래 종료 후 5년까지 (단, 관련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상의 보존기간을 따릅니다) <p>위 보유 기간에서의 거래 종료일이란 "① 당사와의 모든 계약(보험계약, 보험금 지급, 대위변제 채권, 담보 제공 등)의 만기, 해지·해제·취소, 철회일 또는 소멸일 ②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 완성일(상법 제662조), 채권·채무 관계 소멸일 및 그 밖의 사유로 거래관계가 종료한 날 중 가장 나중에 도래한 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한 날"을 말합니다.</p>

수집·이용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u>고유식별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L  신용거래정보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 L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위 <u>개인신용정보</u>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 공공기관 등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감사원, 예금보험공사 등 법령상 업무 수행기관(위탁사업자 포함)
제공받는자의 이용 목적	- 공공기관 등 :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위탁업무 포함)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의 달성할 때까지 (관련 법령상 보존기간을 따름)

제공 항목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위 고유식별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개인(신용)정보	일반개인정보
	성명, 주소, 생년월일, 이메일, 유무선 전화번호, 성별, 국적, 직업, 국내거소신고번호
	신용거래정보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 가입관련 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금융질서 문란 및 관련된 등록과 관련된 금액, 발생, 해소 시기 등에 관한 정보
위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 업무위탁을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업무 수탁자에게 귀하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sgjc.co.kr > 신용정보활용체제 에서 업무수탁자 명단 확인 가능)



202 년 월 일

본인 : (서명)

법정대리인 (서명)

※ 만14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후 서명을 하시고,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는 본인의 직접 동의 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후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만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 안내문(도배·장판 공사용)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는 전세임대주택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도배·장판 공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 도배·장판 공사를 원하는 세입자는 전세계약 체결 후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연락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라며, 공사업체 관계자께서도 아래사항에 유의 하셔서 시공 및 비용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배·장판 공사 지원내역

- 도배·장판 공사는 입주자가 직접 시공업체에 의뢰
- 지원금액 : 부가세 포함하여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전세임대 수혜기간(20년)동안 10년마다 1회씩 지원 가능
- 시공업체 선정 : 일반과세자-세금계산서 발행 / 간이과세자-현금영수증 발행

2. 도배·장판 공사 시 유의사항

- 공사 전에 반드시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문의하여 사전협의 후 공사에 착수
 - ▶ 임의로 시공하시면 공사비 지급 불가
- 공사 전·후 사진을 촬영
 - ① 현관 입구에서 전체적으로 공사 전·후 모습을 같은 위치에서 비교 가능하도록 촬영
 - ② 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비스듬히 촬영하여 시공지점이 가급적 넓게 보이도록 촬영
 - ③ 촬영지점은 모서리진 곳, 창문·방문이 보이는 곳 등 특이지점을 선정
 - ④ 공사 전·후에 달라진 모습이 비교가 가능하도록 촬영
 - ⑤ 도배지 및 장판 자재가 명확히 확인될 수 있도록 사진 촬영

3. 비용청구시 제출 서류

- 세금계산서
 - ① 공사비 총액(부가세 포함)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6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공사비 : 545,455원, 부가세 : 54,545원)
 - ② 6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입주자에게 청구
 - ③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으로 보내는 당일로 기재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도배·장판 업체 통장 사본
- 견적서
- 교체공사 완료확인서
 - ① 입주자의 서명으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입주자는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서명
 - ② 공사비 내역에는 공란이 없이 작성
- 공사 전·후 촬영한 사진대지

4. 도배·장판 관련 문의사항

- 지역별 담당 법무법인으로 문의(5페이지 참조)
 - ※ 관련 서식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서 사업정보 ▶ 주거복지사업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서식 및 FAQ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도배·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1)

입주자 확인		
확인일시	월	일
확인자		
서명		

■ 공사비 내역

주소					
등기부상면적	(m ²)	입주자성명		전화번호	
공사내역	구분	제품명(코드번호)	수량	공사비	부가세
	벽지			원	원
	바닥재			원	원
	부자재			원	원
	인건비			원	원
	소계			원	원
	총공사비(부가세 포함)				원
공사업체	상호명	대표자		전화번호	
비용부담	총 공사비	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원	입주자

■ 입주자 및 시공업체 유의사항

- 도배장판 교체공사비는 부가세 포함 60만원까지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지원해드리며, 6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입주자가 직접 부담 하셔야 합니다.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유의사항
 - 공사비 총액(부가세 포함)이 60만원 이상인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부담분만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우편발송일로 기재.
- 시공 전에 반드시 견적서(자재명, 수량, 단가를 포함한 상세견적)를 경기주택도시공사로 보내고 유선으로 시공 가능 여부에 대해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시공하셔야만 지출이 가능합니다
- 시공 후 아래의 불임서류(사진)와 완료확인서를 작성하여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견적서와 함께 우편으로 제출 하시면 됩니다. ※ 공사 전·후 비교 가능한 사진을 붙여야 함

<우편 보내실 주소>

- (16942)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중앙로 338(상현동) 광교우미뉴브 B동 102호 서린 법무법인
- (06123)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6길 26, 3층(역삼동) 덕수 법무법인
- (0705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08, 4층(서초동, 양원빌딩) 선린 법무법인

※ 지역별 담당 법무사(법무법인) 확인은 5페이지 참조

- 입주자께서는 반드시 하자여부를 확인한 후 입주자 확인란에 서명해주시기 바라며, 공사상 하자에 대해서는 처리절차를 업체와 직접 상의하셔야 합니다.(명함 수령)
-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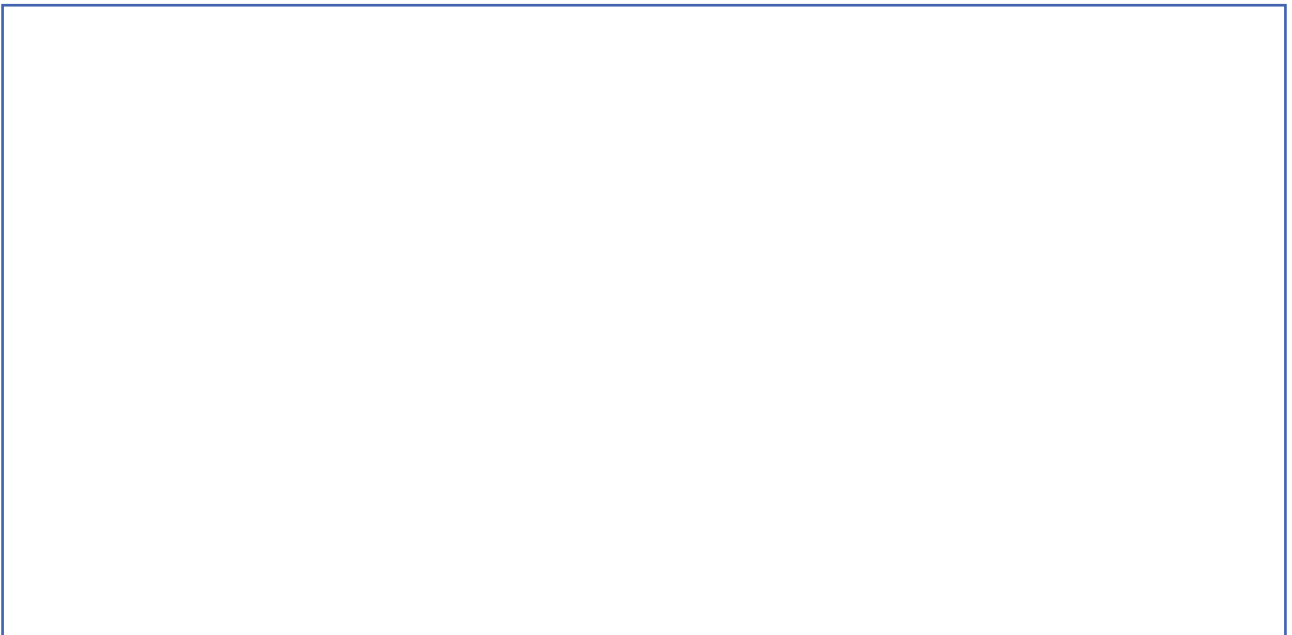
도배·장판 교체공사 완료확인서(2)

공사일 : 년 월 일

■ 공사 전 사진 : 전경 / 거실 / 방1 / 방2 / 방3



■ 공사 후 사진 : 전경 / 거실 / 방1 / 방2 / 방3



GH 전세임대 협력공인중개사 명단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강촌	031-581-7070	가평군 가평읍
설악IC	031-585-5070	가평군 설악면
신세기부동산	031-964-1800	고양시 관산동
양지	031-962-8549	고양시 관산동
올라	031-962-0042	고양시 관산동
원박춘숙	031-969-8944	고양시 관산동
통일로	031-966-8944	고양시 관산동
평화	031-962-0619	고양시 관산동
한강	031-962-8668	고양시 관산동
행복한(조한송)	031-964-5533	고양시 관산동
현대홍병실	031-964-6745	고양시 내유동
현대	031-964-8889	고양시 사리현동
LG부동산	031-969-6636	고양시 성사동
리츠부동산	031-977-0444	고양시 성석동
조은자이	010-2394-1917	고양시 식사동
금빛	031-975-7900	고양시 일산동
미소	031-976-5800	고양시 일산동
부동산랜드	031-917-1237	고양시 일산동
유진	031-975-2022	고양시 일산동
일산114	031-976-9114	고양시 일산동
일산어반스카이	031-976-9393	고양시 일산동
주은	031-913-0894	고양시 일산동
휴타운	031-975-5155	고양시 일산동
벽산	031-911-5115	고양시 정발산동
진실	031-914-7777	고양시 주업동
국제	031-975-0002	고양시 중산동
꽃과숲	031-976-0050	고양시 중산동
대한	031-977-0100	고양시 중산동
건영4단지나라	031-918-1111	고양시 탄현동
사계절	031-921-9999	고양시 탄현동
동네	031-973-6565	고양시 토당동
새롬곽경예	031-973-0044	고양시 토당동
하나	031-971-0600	고양시 토당동
한솔	031-938-5700	고양시 토당동
19단지공인중개사	010-8552-7747	고양시 행산동
1단지부동산	031-965-6644	고양시 화정동
대한	02-2615-5544	광명시 광명동
동성	02-2617-7204	광명시 광명동
부동산랜드	02-2066-4795	광명시 광명동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열린	02-3666-8866	광명시 광명동
새서울	02-898-9589	광명시 소하동
서울	02-897-4004	광명시 소하동
금손	02-2683-4900	광명시 철산동
세화	02-894-0044	광명시 하안동
국민부동산송인	031-763-0805	광주시 송정동
킴스	031-764-2700	광주시 송정동
신현	031-719-5566	광주시 신현동
이웃사랑	031-761-0070	광주시 양벌동
희망	031-767-8888	광주시 양벌동
광주역다울	031-5377-8519	광주시 역동
평화자이	031-767-6655	광주시 역동
롯데	031-798-0030	광주시 초월읍
한성	031-763-3008	광주시 초월읍
칠성부동산	031-769-6464	광주시 탄벌동
두리	031-551-5100	구리시 수택동
명성	031-556-8988	구리시 수택동
정은	031-568-4900	구리시 수택동
트윈팰리스	031-564-8844	구리시 수택동
119	031-456-4119	군포시 금정동
거성	031-453-0114	군포시 금정동
더존	031-399-0750	군포시 금정동
동일	031-453-0300	군포시 금정동
새롬	031-455-1120	군포시 금정동
새희망	031-392-6500	군포시 금정동
코리아	031-429-9600	군포시 금정동
하나로	031-396-8955	군포시 금정동
드림	031-456-1917	군포시 당동
탑	031-429-0043	군포시 당동
하나	031-427-4949	군포시 당동
행운	031-427-7007	군포시 당동
금정역삼성	010-4092-7860	군포시 산본동
명지	031-395-0600	군포시 산본동
호박	031-399-2848 010-7337-7009	군포시 산본동
청기와	031-982-4466	김포시 감정동
호수	031-998-4556	김포시 구래동
성원부동산	031-984-7200	김포시 사우동
파크드림	031-996-3087	김포시 운양동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ok대성	031-592-4444	남양주시 금곡동
경춘부동산	031-592-8889 010-9077-3086	남양주시 금곡동
남양부동산	031-592-9666	남양주시 금곡동
가운부동산랜드	031-521-0033	남양주시 다산동
조은	031-521-3355	남양주시 와부읍
가지부동산	031-572-0025	남양주시 퇴계원읍
퇴계원극동	031-574-3000	남양주시 퇴계원읍
샘	031-594-9744	남양주시 화도읍
천마산	031-593-4800	남양주시 화도읍
스마일	031-857-3332	동두천시 생연동
태우	031-864-4517	동두천시 생연동
해오름	031-864-5300	동두천시 생연동
효성강홍만	031-865-8949	동두천시 생연동
푸른부동산	031-867-7799	동두천시 지행동
강남	032-341-3114	부천시 괴안동
참빛부동산	032-345-1500	부천시 괴안동
미래	032-684-4455	부천시 삼정동
중동역명성	032-661-3311	부천시 상동
영동	032-349-7980	부천시 소사본동
조은터	032-342-4300	부천시 소사본동
까치부동산	032-666-7114	부천시 송내동
부동산랜드	032-666-9900	부천시 송내동
부림	032-662-7676	부천시 송내동
119	032-613-8944	부천시 심곡본동
대우	032-613-3119	부천시 심곡본동
한울	032-661-8999	부천시 심곡본동
희망	032-661-4600	부천시 심곡본동
두산월드	032-675-1500	부천시 약대동
신세계	032-681-4488	부천시 여월동
에이원	032-341-2223	부천시 역곡동
대광	032-683-7500	부천시 오정동
세일	032-674-8833	부천시 오정동
에스부동산	032-679-4500	부천시 오정동
우리집	032-682-5555	부천시 오정동
토백이	032-682-8600	부천시 오정동
선경부동산	032-662-4949	부천시 원미동
풍림	032-666-8700	부천시 원미동
까치	032-677-8280	부천시 원종동
리치	032-679-7700	부천시 원종동
월드	032-674-0007	부천시 원종동
코리아부동산	032-674-2244	부천시 원종동
단대역	031-748-8585	성남시 금광동
로얄	031-749-9408	성남시 상대원동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부부	031-733-9990	성남시 상대원동
중앙	031-743-4242	성남시 상대원동
베스트	031-751-0049	성남시 수진동
한마음	031-751-0052	성남시 수진동
은혜	031-748-7771	성남시 은행2동
가원2	010-5906-1553	성남시 은행동
한솔	031-741-0077	성남시 은행동
위례역복	02-443-1800	성남시 창곡동
미래	031-721-4455	성남시 태평동
영동	031-756-8824	성남시 태평동
한빛부동산	031-748-8567	성남시 태평동
월드	031-247-8666	수원시 고등동
행복담은	031-244-8940	수원시 고등동
미래	010-8654-3975	수원시 고색동
명동	031-236-4791	수원시 권선동
이미숙	031-898-9125	수원시 권선동
연두	031-255-9688	수원시 매산동
극동	010-6403-4468	수원시 매탄동
대명	031-211-4166	수원시 매탄동
매원	031-213-5657	수원시 매탄동
시티	031-212-1777	수원시 매탄동
신성	010-8775-7438	수원시 매탄동
아주	031-212-0031	수원시 매탄동
왕성	031-215-3839	수원시 매탄동
정보월드	031-217-6303	수원시 매탄동
정검다리	031-213-5400	수원시 매탄동
서호	031-242-8949	수원시 서둔동
선경동남성일	031-293-0101	수원시 서둔동
다울	031-292-9661	수원시 세류동
버드내	031-222-1336	수원시 세류동
삼일합동	031-231-2131 010-4132-7931	수원시 세류동
터미널부동산	031-235-2022	수원시 세류동
한길	031-234-8545 010-8645-2740	수원시 세류동
거성	031-888-7003	수원시 송죽동
현대	031-256-1125	수원시 송죽동
그린부동산합동	031-247-4466	수원시 영화동
부자	031-254-4416	수원시 영화동
으뜸	031-248-0900	수원시 영화동
장안	031-241-4944	수원시 조원동
대박	031-223-0855	수원시 지동
탐삼성합동	031-296-4944	수원시 탐동
한아름	031-292-1177	수원시 탐동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자이	031-255-8924	수원시 파장동
모든	031-241-9991	수원시 화서동
이화부동산	031-255-8952	수원시 화서동
태양부동산	031-278-8900	수원시 화서동
시민부동산	031-492-1010	시흥시 거모동
햇빛부동산	031-492-4928	시흥시 거모동
메트로	031-315-6660	시흥시 대야동
산호온누리	010-9372-8614	시흥시 신천동
월곶부동산	031-314-8899	시흥시 월곶동
행운	031-404-2002	시흥시 월곶동
전원	010-4137-9200	시흥시 정왕동
한마음	031-403-2288	시흥시 조남동
행운	031-483-7007	시흥시 조남동
태산	031-315-8822	시흥시 포동
나라	031-415-8833	안산시 본오동
상록	031-416-1766	안산시 본오동
성실	031-407-6262	안산시 본오동
이호	031-409-9595	안산시 본오동
채움	031-402-6300	안산시 본오동
부자	031-520-2500	안산시 부곡동
나라	031-407-2255	안산시 사동
대동	031-415-0700	안산시 사동
우리	031-438-8249	안산시 사동
중앙	031-407-0251	안산시 사동
황금	031-408-9533	안산시 사동
우리푸르지오	031-413-0330	안산시 선부동
행운부동산	031-481-9920	안산시 선부동
황금	031-402-3232	안산시 선부동
강서	031-405-2345	안산시 와동
시민부동산법인	031-403-4982	안산시 원곡동
영광	031-483-8864	안산시 원곡동
LG	031-486-2277	안산시 월피동
거북	031-439-7600	안산시 월피동
미래	031-483-5110	안산시 월피동
토방	010-9097-1822	안산시 월피동
나무	031-505-8245	안산시 이동
한대역	031-416-3030	안산시 이동
성공	031-438-2030	안산시 일동
스마트	031-418-9999	안산시 일동
지원	031-417-2121	안산시 일동
온누리	031-655-2411	안성시 공도읍
임광2대가	031-651-6661	안성시 공도읍
주신	010-2709-6501	안성시 공도읍
탑	031-653-5949	안성시 공도읍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명문	031-360-0309	안양시 관양동
뉴한신	031-468-8686	안양시 박달동
대한	031-471-0003	안양시 석수동
좋은공인중개사	031-474-4466	안양시 석수동
태양	031-474-8585	안양시 석수동
하나로	010-2258-7217	안양시 석수동
대림	031-465-4400	안양시 안양동
박연문	010-5642-5904	안양시 안양동
뉴탑	031-857-5800	양주시 고암동
덕정플러스	031-857-8900	양주시 고암동
미래	031-857-5005	양주시 고암동
윤중	031-868-0332	양주시 덕계동
덕정	031-864-8877	양주시 덕정동
봉우마을	031-857-7100	양주시 덕정동
창대	031-862-5500	양주시 덕정동
박진영	031-855-4848	양주시 백석읍
은봉	031-829-8400	양주시 백석읍
한빛	031-826-8955	양주시 백석읍
황도	031-879-9895	양주시 백석읍
엘지	031-844-0114	양주시 삼송동
황금	031-866-5004	양주시 옥정동
스마트	010-8824-5775	양평군 양평읍
빅드림	031-882-6867	여주시 여주읍
여주해오름	031-885-3434	여주시 흥문동
우미	031-373-0114	오산시 수청동
에스	031-377-0070	오산시 청학동
강남대	031-274-3300	용인시 구갈동
경인	031-287-3300	용인시 구갈동
코끼리	031-274-9595	용인시 구갈동
삼익	031-321-4988	용인시 김량장동
애일	031-323-5665	용인시 김량장동
현대	031-321-4924	용인시 김량장동
태영세종	031-287-3400	용인시 마북동
거성	031-338-8935	용인시 모현읍
사방팔방	031-322-5678	용인시 모현읍
한국부동산	031-334-7373	용인시 모현읍
보라	031-287-4455	용인시 보라동
상갈주공	031-281-7171	용인시 상갈동
가나	031-275-6868	용인시 신갈동
한수	031-281-6755	용인시 신갈동
신원	031-333-8684	용인시 양지면
양지미소	031-339-2688	용인시 양지면
한라	031-333-9199	용인시 역북동
으뜸	031-339-4368	용인시 포곡읍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명동	031-266-5949	용인시 풍덕천동
대성	031-461-0224	의왕시 삼동
의왕	031-461-8866	의왕시 삼동
일광	031-461-7777	의왕시 삼동
새롬합동	031-458-4900	의왕시 오전동
가능	031-876-5515	의정부시 가능동
건영	031-848-0004	의정부시 가능동
롯데한빛	031-826-4884	의정부시 가능동
만사OK	031-840-8484	의정부시 가능동
명성	031-837-2500	의정부시 가능동
서로	031-876-8545	의정부시 가능동
서비스	031-836-7799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갑	031-837-0008	의정부시 가능동
평화	031-826-1919	의정부시 가능동
하나	031-872-7272	의정부시 가능동
행복한부동산	031-837-6400	의정부시 가능동
황금	010-8835-7598	의정부시 가능동
황태자부동산	031-875-4308	의정부시 가능동
금오3단지	031-853-2100	의정부시 금오동
신도행운	031-848-6400	의정부시 금오동
현대	031-847-0089	의정부시 금오동
가교	031-826-8844	의정부시 녹양동
민락풍경채정서정	031-852-8859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센트럴7단지	031-852-4141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팰리스탑	031-852-5989	의정부시 민락동
우미린100억	031-848-2785	의정부시 신곡동
굿모닝	031-841-1900	의정부시 신곡동
뉴스	031-821-4411	의정부시 신곡동
원부동산	010-2707-2224	의정부시 신곡동
제일부동산	031-842-6881	의정부시 신곡동
청솔	031-847-9600	의정부시 신곡동
탐자이	031-894-7244	의정부시 신곡동
호박	031-845-0033	의정부시 신곡동
호박	031-821-6100	의정부시 신곡동
송산주공	031-852-8924	의정부시 용현동
탑	031-853-6776	의정부시 용현동
뉴 행복한	031-871-0029	의정부시 의정부동
단지내센트럴탑	031-873-1002	의정부시 의정부동
당근	031-823-1212	의정부시 의정부동
대륙	031-871-2266	의정부시 의정부동
미소	031-846-8787	의정부시 의정부동
복돼지	031-848-3535	의정부시 의정부동
참조은	031-878-8959	의정부시 의정부동
청비	031-844-6633	의정부시 의정부동

업체명	연락처	지번(동)
동신부동산	031-841-2662	의정부시 태평로
호원드림	031-875-4500	의정부시 호원동
유승	031-948-3456	파주시 검산동
다우	031-946-5050	파주시 금촌동
준비된	031-944-6088	파주시 금촌동
한울로	031-947-2525	파주시 통패동
교하신도시	031-949-2200	파주시 문발동
미래로	031-949-8885	파주시 문발동
오천사부동산	031-953-5004	파주시 문산읍
수정	031-945-2516	파주시 아동동
부동산리더	031-948-8446	파주시 아당동
삼삼	031-957-0070	파주시 월롱면
해요	031-653-4816	평택시 동삭동
뉴비전	031-657-0003	평택시 비전동
비앤비	031-668-0078	평택시 서장동
부원	010-4555-8090	평택시 세교동
대성	031-668-5350	평택시 신장동
메타	031-657-8944 010-6800-8944	평택시 용이동
에스	010-9885-0339	평택시 용이동
아줌마	031-666-1350	평택시 지산동
연세	031-663-9858	평택시 지산동
조은	031-665-6288	평택시 지산동
지산부동산	031-666-0808	평택시 지산동
스마일부동산	031-652-6336	평택시 팽성읍
행운	031-654-4144	평택시 팽성읍
산들	010-5950-5949	하남시 덕풍동
석바대부동산	031-796-0369	하남시 신장동
트레벨	031-796-1800	하남시 신장동
하남미소	031-791-8877	하남시 신장동
우리들	031-351-2773	화성시 우정읍
오투	031-354-7789	화성시 향남읍

※ 공사 홈페이지 및 전세임대 챗봇에서도 확인 가능
 (홈페이지) 공사 홈페이지 ▶ 사업정보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서식 및 FAQ ▶ “협력공인중개사 명단”
 (챗봇) 공사 홈페이지 우측 하단 ▶ “GH전세임대 챗봇” 클릭 ▶ 채팅창
 에 ▶ “협력공인중개사” 입력

임대인 변경 요청서

전세임대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변경되어 아래와 같이 변경을 요청합니다.

지원주택 소재지 :

입주자

- 성명 :

- 연락처 :

변경된 임대인

- 성명 :

- 주민번호 :

- 연락처 :

- 주소 :

- 등기일 :

※회신 Fax 번호 : 031-360-6352 또는 031-360-6358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귀하

이사, 하자 등 전화문의 하실 곳

내용	세부 사항	문의처
주택에 하자가 있어 집 수선을 원하실 때	- 누수 / 결로 - 각종 설비 / 시설 고장 - 인테리어 공사	임대인(집주인)
이사 가고 싶을 때 / 전세임대 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 최소 3개월 전에 연락주세요	- 이삿날(퇴거 날) 협의 - 보증금 반환 협의	①임대인(집주인)
	- 이사재계약 문의 - 입주자 자격 문의(소득조회 등) - 보증금 입금, 반환 금액, 계좌 문의	②경기주택도시공사(GH)
	- 주택 물색 문의 - 주택 전용면적 확인 - 주택 권리심사표 작성	③공인중개사
현재 집에서 연장 또는 변경 계약 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 올려달라고 할 때 포함) * 최소 3개월 전 연락주세요	- 공사 쪽에 가능여부 확인 - 동일주택 동일조건 재계약 - 동일주택 증액 / 감액 재계약	경기주택도시공사(GH)
입주 후 변동 사항이 있을 때	- 임대인이 변경되었을 때 - 세대 구성원 변동 시 - 계약자 사망 / 이혼 시 / 혼인 시	
기존주택 전세임대 사업이 궁금할 때	- 계약관련 전반적인 문의 - 입주안내 우편물 수령 문의 - 주택경매 등 법원통지서가 왔을 때	
임대료 관련 문의 사항이 있을 때	- 미납 임대료 문의 - 임대료 입금계좌 확인 - 납부 시기 문의 - 자동 이체 방법 문의 - 임대료 고지서 미확인	
도배장판 공사 하고싶을 때	- 지원가능 여부 확인, 지원금액 문의 - 서류 제출	담당 법무법인
계약체결 일정, 서류 등을 알고싶을 때	- (재)계약시 필요한 서류 문의 - 계약 가능한 날짜 문의 - 권리심사 서류 접수 및 진행사항 문의	
이삿짐 견적서(계약서), 전입 등본 제출할 때	- 이사 전 이삿짐 견적서/계약서 제출 - 이사 후 새 주소 주민등록등본 제출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신청할 때	- 대상자 선정 관련	지자체(주민센터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